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7.(월)

제263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권광택 의원외 6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7.9.12)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변경(안 제4조).
-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안 제27조).
 -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함(안 제33조).
-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 증설 기업도 포함하기로 함(안 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최영배)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제정된 후 2006년 12월 22일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시 우리 도의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중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투자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기타 잡수입”을 “차입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17조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다음에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금액”을 “토지매입 금

액"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을 "타 시·도 이전기업 등 준용"으로 하고, "국내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를 "도내공장 증설 기업"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중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삭제 한다.

제34조제1항중 "이전기업"을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증설 기업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생략) ②(생략) 1. <u>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u> 2. ~ 4.(생략) ③(생략)</p> | <p>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u>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u> 2. ~ 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
| <p>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 ③ (생략) ④<u>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관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u></p> | <p>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p> |
| <p>제13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생략) ②(생략) 1. ~ 3. (생략) 4. <u>기타 잡수입</u> ③ ~ ④ (생략)</p> | <p>제13조(투자진흥기금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u>차입금 및 기타 잡수입</u> ③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u>경제통상국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② (생략)</p> | <p>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u>경제투자본부장</u>----- ----- ----- ②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